

『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』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흥남이 의원 외 5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원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심사를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구성인원 : 9명(위원장 1, 부위원장 1, 위원 7)
- 존속기간 :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- 활동내용 :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원 징계심사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87조(징계의 요구),
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 제7조(특별위원회),
「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」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(구성)

5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,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에 따른 징계심사를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,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